

의문사 접수사건개요

의문사 접수사건개요

대통령소속 의

CPb1.70

위원회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 접수사건개요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개정·증보판 발간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국민 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의문사진상규명예관한특별법(2000.1.15. 법률 제6170호) 제정과 함께 2000년 10월 17일 출범된 대통령소속 국가기관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권위주의 통치시대에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공권력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한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기하고 아울러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여 민주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그간 의문사 관련 진정사건 80건과 직권사건 5건 등 총 85건을 접수하였으며, 이중 이미 결정을 내린 15건을 제외한 나머지 70건의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가 종결되는 대로 곧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위원회의 역사적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인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중인 사건 대다수는 10년에서 30년 전에 일어난 일로서 일부는 기록이 파기되어 자료가 없거나 관계기관의 비협조적 태도로 진상규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과 관계기관 모두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때에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고 우리 역사가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회가 진상규명이라는 사명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2002년 5월 18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한 상 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秋休會 呼報會 會狀

목 차

I. 진정접수 내역 3

II. 사건분류 내역 9

III. 사건별 진정개요 13

IV. 색 인 98

I. 사건 접수내역(85건)

□ 진정사건(80건)

연번	접수일자	진정인	피진정인	조사개시일	비고 (담당과)
1	2000. 11. 9.	(양상석)의 자 양순복	불특정	2000. 12. 2.	조사1과
2	2000. 11. 21.	(임용준)의 妹 임수경 兄 임용훈	국방부	2000. 12. 9.	조사3과
3	2000. 11. 23.	(신호수)의父 신정학	경찰청	2000. 12. 9.	조사2과
4	"	(이이동)의妹 이순희	국방부	2000. 12. 9.	조사3과
5	"	(김두황)의兄 김두원	"	2000. 12. 9.	"
6	"	(정경식)의母 김을선	경찰청	2000. 12.16.	조사2과
7	"	(최종길)의知人 이광택	前중앙정보부	2000. 12. 9.	조사1과
8	2000. 11. 28.	(신영수)의兄 신윤수	경찰청	2000. 12. 16.	특조과
9	2000. 12. 12.	(김창수)의子 김용문	불특정	2001. 1. 6.	조사1과
10	"	(이창돈)의父 이기천	국방부	"	조사3과
11	2000. 12. 13.	(우수열)의兄 우학수	불특정	"	조사2과
12	2000. 12. 18.	(이진래)의兄 이정래	캠프헨리 (대구 카튜사)	2001. 1. 13.	조사3과
13	2000. 12. 22.	(장종훈)의父 장동재	중랑경찰서	"	조사2과
14	2000. 12. 27.	(장준하)의妻 김희숙	국가정보원	2001. 1. 20.	조사1과
15	2000.12.28.	(박헌강)의父 박광립	불특정	2001. 1. 20.	조사2과

연번	접수일자	진정인	피진정인	조사개시일	담당과
16	"	(황선철)의 父 황규태	경찰	2001. 1. 20. 각하	각하
17	"	(송중호)의 兄 송창호	국방부	2001. 1. 13.	조사3과
18	"	(박태순)의 妹 박희순	"	2001. 1. 20.	특조과
19	"	(이철규)의 父 이정진	국가정보원	"	조사1과
20	"	(이내창)의 兄 이내이	"	"	"
21	"	(박창수)의 母 김정자	"	"	"
22	"	(김준배)의 父 김현국	경찰	2001. 1. 13.	조사2과
23	"	(이덕인)의 父 이기주	"	"	"
24	"	(우종원)의 母 이계남	"	"	"
25	"	(김성수)의 父 김종욱	"	"	"
26	"	(문용섭)의 知人 박채영	"	2001. 1. 20.	"
27	"	(문승필)의 母 오순례	"	"	"
28	"	(정법영)의 父 정진동	"	2001. 1. 13.	"
29	"	(김상원)의 弟 김상모	"	2001. 1. 20.	"
30	"	(이재호)의 妹 이순예	"	"	"

연번	접수일자	진정인	피진정인	조사개시일	담당과
31	2000.12.28.	(고정희)의 母 나화순	경찰	2001. 1. 20.	조사2과
32	"	(허원근)의 父 허영춘	국방부	2001. 1. 13.	조사3과
33	"	(문영수)의 知人 허영춘	경찰	2001. 1. 20.	조사2과
34	"	(오범근)의 知人 허영춘	"	"	"
35	"	(배중손)의 知人 허영춘	"	"	"
36	"	(김용갑)의 母 이정인	"	2001. 1. 13.	"
37	"	(박종근)의 父 박채락	국방부	2001. 1. 20.	조사3과
38	"	(우인수)의 母 서부임	"	2001. 1. 13.	"
39	"	(이윤성)의 父 이명률	"	"	"
40	"	(박필호)의 父 박재원	"	2001. 1. 20. 각하	"
41	"	(정연관)의 父 정명화	"	2001. 1. 13.	"
42	"	(남현진)의 妹 남현순	"	2001. 1. 20.	"
43	"	(박상구)의 母 우정학	"	2001. 1. 20. 각하	"
44	"	(노철승)의 妹 노영희 知人 김봉학	"	2001. 1. 20.	"
45	"	(이승삼)의 父 이두형	"	"	"

연번	접수일자	진 정 인	피진정인	조사개시일	담당과
46	"	(박성은)의 兄 박성현	"	2001. 1. 20. 각하	"
47	2000.12.28.	(임기윤)의 妻 최광명	국방부	2001. 1. 20.	조사3과
48	"	(정인택)의 妹 정영란	정부	"	조사2과
49	"	(한영현)의 兄 한강현	국방부	"	조사3과
50	"	(김영환)의 4寸 兄 김진환	"	"	"
51	"	(정도준)의 父 정정관	불특정	"	"
52	"	(손윤규)의 知人 박종린	정부	"	특조과
53	"	(한희철)의 父 한상훈	국방부	2001. 1. 13.	조사3과
54	"	(변형만)의 知人 임방규	정부	2001. 1. 20.	특조과
55	"	(최은순)의 兄 최문순	국방부	2001. 1. 13.	조사3과
56	"	(최석기)의 知人 기세문	정부	2001. 1. 20.	특조과
57	"	(박용서)의 知人 기세문	"	"	"
58	"	(김용성)의 子 김경재	"	"	"
59	"	(안치웅)의 父 안영규	불특정	"	"
60	"	(노진수)의 兄 노진호	정부	"	"

연번	접수일자	진 정 인	피진정인	조사개시일	담당과
61	"	(심오석)의 父 심재면	"	"	"
62	"	(정성희)의 父 정낙현	국방부	"	조사3과
63	"	(김용권)의 母 박명선	국방부	2001. 1. 13.	"
64	"	(최우혁)의 父 최봉규	"	"	"
65	2000.12.29.	(박인순)의 兄 박능출	불특정	2001. 1. 20.	조사2과
66	"	(심재환)의 知人 오재영	"	"	"
67	"	(김소진)의 妹 김정화	국방부	"	조사3과
68	"	(이재근)의 父 이두섭	불특정	"	"
69	"	(권두영)의 子 권혜진	안기부	"	특조과
70	"	(정은복)의 子 최종윤	"	"	조사1과
71	2000.12.30.	(김제강)의 妻 정진옥	불특정	"	"
72	"	(임태남)의 妻 서순자	"	"	조사2과
73	"	(박태조)의 妹 박정희	"	"	"
74	2001.1.2.	(이수영)의 知人 김제완	국가정보원	"	조사1과
75	"	(이승룡)의 母 이순옥	대한민국	"	조사2과

연번	접수일자	진정인	피진정인	조사개시일	담당과
76	"	(김석조)의 弟 김용섭	국가정보원	"	조사1과
77	"	(정종인)의 兄 정종후	경찰	2001. 1. 20. 각하	각하
78	"	(김진홍)의 母 강선희	국방부 외 1	2001. 1. 20.	특조과
79	"	(박동학)의 知人 이승우	경찰	"	조사2과
80	2001.1.5. (행자부 경유)	(최봉대)의 弟 최봉일	"	"	"

□ 직권사건(5건)

연번	의문사한 자	관련기관	조사개시일	담당과
81	박영두	교도소	2001. 7. 13.	특조과
82	탁은주	경찰	2001. 1. 20.	"
83	이재문	교도소	2001. 3. 17.	조사2과
84	장석구	"	"	조사1과
85	전정배	국방부	2001. 4. 7.	특조과

II. 의문사사건 항목별 통계

□ 성 별

구 분	계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	특별조사과
계	85	12	30	28	15
남 자	83	11	30	28	14
여 자	2	1			1

□ 연령 별

구 분	계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	특별조사과
계	85	12	30	28	15
10 대	5		2	2	1
20 대	55	3	20	25	7
30 대	8	1	6		1
40 대	6	3	2		1
50 대	5	2		1	2
60 대	3	1			2
미 상	3	2			1

□ 진정경로별

구 분	계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	특별조사과
계	85	12	30	28	15
개 별 진 정	28	6	12	6	4
유 가 협 관 련	44	5	17	22	
국 민 연 대 관 련	8				8
직 권 조 사	5	1	1		3

□ 직업별

구분	계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	특별조사과
계	85	12	30	28	15
학생	20	2	14		4
회사원	3		3		
교수·조교	2	2			
언론인	2	1	1		
사업	2	1			1
장기수	5				5
재야인사	1	1			
공무원	1	1			
군인	25			25	
전투경찰	1		1		
연구원	1			1	
정치인	1	1			
노점상	1		1		
가정주부	1	1			
운전수	3		3		
노동자	7	1	4	1	1
무직	5		2	1	2
기타	4	1	1		2

□ 사망연도별

*()는 행방불명

구분	계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	특별조사과
계	85(6)	12(1)	30	28	15(4)
1960년대					
1970년대	14(1)	8	2		4(1)
1980년대	55(3)	3(1)	22	23	7(2)
1990년대	16(2)	1	6	5	4(2)

□ 진정인과의 관계별

구분	계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	특별조사과
계	85	12	30	28	15
부모	35	2	15	15	3
배우자	4	2	1	1	
형제자매	23	2	7	11	3
자녀	5	3			2
기타 친족	1			1	
지인	12	2	6		4
직권조사	5	1	1		3

□ 피진정기관별

구분	계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	특별조사과
계	85	12	30	28	15
국가정보원	9	8			1
경찰	22		21		1
국방부	28			25	3
국가, 정부	9		2		7
교도소	3	1	1		1
미군(캠프헨리)	1			1	
불특정	13	3	6	2	2

□ 수사결과상 사망원인별

구 분	계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	특별조사과
계	85	12	30	28	15
추락사	10	4	5		1
익사	4	2	1	1	
옥중사망	9	1	1		7
총기사	11			10	1
절창	1	1			
의사	10		4	6	
음독사	5		3	2	
소사	3		1	2	
폭행(상해)치사	4	1	2	1	
뇌출혈	1			1	
열사병	1			1	
질식사	1			1	
동맥파열	1			1	
교통사고	4		4		
뇌손상후유증사	2		2		
자연사	1		1		
행방불명(실종)	5	1			4
기타	12	2	6	2	2

Ⅲ. 사건별 진정기요

□ 진정 제1호 (양상석 사건)

의문사한 자	◦ 양상석(생년월일 미상, 정치인)
피진정기관	◦ 불특정
사망일시	◦ 1971년 4월 27일 14:00경부터 같은해 4월 30일 17:00경 까지 사이
사건개요	◦ 양상석은 1971년 당시 신민당 금산지구당 위원장으로서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여 선거운동 중, 같은해 4월 27일 집에서 나간 후 행방불명되어 같은달 30일 17:00경 금산읍 양지리 뒷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됨.
수사결과	◦ 도루코 면도날로 배를 갈라 할복 자살한 것으로 수사종결.
진정취지	◦ 자살할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고, 주검이 놓여 있는 현장의 모습, 주저흔·자해에 사용되었다는 면도날·명함 뒤에 쓰여진 글귀(나는 주검으로 우를 청산한다)의 자필여부에 관하여 엇갈린 증언이 있었으며, 유족의 참관없이 부검이 이루어지는 등 수사과정 및 결과에 많은 의문점이 있어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2호 (임용준 사건)

의문사한 자	◦ 임용준(1962년 4월 21일생, 군인)
피진정기관	◦ 국방부
사망일시	◦ 1984년 11월 2일 17:45경
사건개요	◦ 임용준은 1981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 입학한 후 1984년 4월 7일 입대휴학원을 제출하고 같은달 18일 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5군단 638포병대대 일병으로 복무하던 중, 같은해 11월 2일 17:45경 M-16 소총 탄환에 의해 목 부위가 관통당한 상태의 변사체로 발견됨.
수사결과	◦ 신상비관을 이유로 총기(M-16)자살한 것으로 수사종결
진정취지	◦ 1983년 10월경 학내 시위에 적극 가담하여 서대문경찰서에 연행된 이후 경찰관 및 국가안전기획부의 사복요원에게 수시로 협박과 회유를 받았고, 학생운동을 그만두고 군에 입대할 것을 강요받아 군에 입대하였고, ◦ 자살할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당시 일병 진급 후 첫 휴가를 앞둔 상황이었고, 유서도 없으며 사입구와 사출구를 이은 선이 목선과 90도를 이루고 있어 M-16 소총의 길이를 고려할 때 자살이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이 있음에도 자살로 수사종결한 것은 많은 의문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3호 (신호수 사건)

의문사한 자	◦ 신호수(1963년 8월 6일생, 인천 연안가스 배달원)
피진정기관	◦ 대한민국
사망일시	◦ 1986년 6월 11일부터 같은달 19일까지 사이
사건개요	◦ 신호수는 1986년 6월 11일 13:30경 서울시경 대공과 형사라고 신분을 밝힌 3명의 남자에 의하여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서부경찰서로 연행된 후 실종되어, 같은 달 19일 전남 여천군 돌산읍 대미산 중턱의 바위굴 속에서 목을 맨 변사체로 발견됨.
수사결과	◦ 검안 및 부검 결과와 현장의 지형 등으로 타살 혐의점 전혀 없으며, 자신의 옷으로 줄을 만들어 한쪽 끝을 바위틈에 끼우고 목을 매어 자살한 것으로 수사종결.
진정취지	◦ 1985년 신호수가 방위복무 중 포상휴가를 받으려고 대남선전전단을 습득하여 보관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같은 해 9월 8일부터 1986년 6월 11일까지 약 9개월 동안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장홍공작'이란 이름으로 공작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행하였다는 점과, ◦ 변사체가 흰색 면양말에 팬티만 걸친 상태이고, 양팔을 휘감아 등 부분과 함께 혁대로 묶여 있는 등 변사체의 형상 및 현장 상황과 사체의 두개골에 선상골절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자살이라고 납득하기 어렵고, ◦ 사망과정에 공권력의 직접적인 개입이 유력하므로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4호 (이이동 사건)

의문사한 자	◦ 이이동(1966년 4월 13일생, 군인 사망당시 이병)
피진정기관	◦ 대한민국/국방부/육군본부/군수사령부/제9탄약창
사망일시	◦ 1987년 6월 15일 14:10경
사건개요	◦ 이이동은 1987년 1월 10일 군에 입대하여 창원시 소재 육군 군수사 제9탄약창 2경비중대에 근무하던 중, 같은해 6월 15일 중대 막사 서북방 약 500미터 떨어진 뒷산 3부 능선에서 우측두부에서 좌측두부로 탄환 1발이 관통된 총상을 입고 쓰러진 상태의 변사체로 발견됨.
수사결과	◦ 사고당일 13:00경 충정교육을 위해 집합했을 때 이이동이 참석하지 않아 중대장의 지시로 전 중대원이 수색작업을 벌이던 중 14:10경 부대 뒷산에서 총소리가 나서 부대원이 달려가 보니 이이동이 총상을 입고 쓰러진 채 사망해 있었으며, 가정문제로 비관하여 개인소지 M-16 소총을 사고 현장에 방치되어 있던 폐탄박스 위에 올려놓고 두 부에 총격을 가해 자살한 것으로 수사종결.
진정취지	◦ 유서가 없다는 점, 수사발표는 가정문제 비관으로 자살하였다고 하나 이이동이 평소 가정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다는 점, 수사발표에 따라 추정되는 사격자세가 매우 부자연스럽다는 점, 시신에 구타흔적이 있었다는 점, 실탄소지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점, 총기와 철모위치 등 현장상황이 전혀 다른 사진이 2장 있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수사과정에서 진상을 은폐·조작하였다는 의심이 있으므로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5호 (김두황 사건)

의문사한 자	◦ 김두황(1960년 6월 23일생, 군인 사망당시 이병)
피진정기관	◦ 대한민국/국방부/기무사령부/육군본부/제22사단
사망일시	◦ 1983년 6월 18일
사건개요	◦ 김두황은 육군제22사단 55연대 8중대에 복무하면서 1983년 6월 18일 23:35경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저진리 소재 (해안 3분초 서북방 800m 지점) 매복근무지에서 상병 류기필, 일병 김웅걸과 매복 근무중, 지급된 M-16 소총 실탄 4발에 의한 총상을 입은 상태의 변사체로 발견됨.
수사결과	◦ 강제 징집되어 주시·관찰 받아온 불만과 군복무 염증 등으로 근무 도중, 소변보러 간다며 근무지 근처에서 총기자살한 것으로 수사종결.
진정취지	◦ 학생운동 과정에서 강제징집되어, 군 당국이 특수학적 변동자로 분류하여 특별관리 하였으며, '녹화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보안대에 연행되어 사상교육·학생운동 관련 내용 수사, 프락치 활동 강요 등 비인간적 처사를 강요 당하였을 것이며, 군 당국이 유서라 발표한 글이 김두황의 평소 필적과 다르고, 사망 몇 일전에 보낸 편지 내용과 김두황의 성격 등으로 미루어 자살할 이유가 없으므로 사망원인에 의문이 있어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6호 (정경식 사건)

의문사한 자	◦ 정경식(1959년 12월 15일생, 대우중공업 창원공장 노동자)
피진정기관	◦ 대한민국
사망일시	◦ 1987년 6월 8일부터 1988년 3월 2일까지 사이
사건개요	◦ 정경식은 1987년 5월 노조지부장 선거 관련문제로 이동석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과 관련하여, 이동석의 고소로 경찰서 출두요구서를 받았다가 같은해 6월 8일 행방불명되었고, 유족의 진정과 항의 등으로 국회의원 설훈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의 활동 중 1987년 12월 14일 천주산 관음사 부근에서 1차적으로 사체 발견되었으나 정경식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그 후 1988년 3월 2일 창원공장 인근 불모산에서 밤나무 가지에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맨 상태의 유골로 발견됨.
수사결과	◦ 정경식이 이동석과의 폭력사건 관련하여 합의가 되지 않자 구속을 두려워하여 고민하다가 비관하여 자살한 것으로 수사종결.
진정취지	◦ 당시 정경식이 모아놓았던 돈 800만원이 있었고, 가족들도 현금을 약 2,000만원을 저금하고 있었으므로, 유서도 없이 합의금 150만원이 없어 비관, 자살한 것을 믿기 어렵고, 변사체 발견 현장의 의문점 등에 비추어 사망 후에 사체가 유기된 것으로 보이는 의혹이 있어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7호 (최종길 사건)

의문사한 자	◦ 최종길(1931년 4월 28일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정교수)
피진정기관	◦ 국가정보원(구 중앙정보부)
사망일시	◦ 1973년 10월 18일부터 같은달 19일까지 사이
사건개요	◦ 유럽거점 대규모 간첩단 사건과 관련하여 1973년 10월 16일 14:00경 중앙정보부 남산 분청사에 동생 최종선(당시 중앙정보부 요원)과 함께 임의출두하여 조사받던 중, 출두 3일만인 같은달 19일 동 중앙정보부 건물 앞에서 변사체로 발견됨.
수사결과	1. 1973년 변사사건 수사결과(중앙정보부) : 최종길은 조사 중 수사관과 함께 화장실로 가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7층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투신자살한 것임. 최종길은 고정간첩으로서 자신의 가족과 국내 조직망을 보호할 목적으로 투신자살한 것으로 추정됨. 2. 1988년 진정사건 수사결과(검찰) : 자살의 증거도 타살의 증거도 없다. 간첩임을 입증할 증거도 간첩이 아님을 입증할 증거도 찾지 못했다.
진정취지	◦ 유럽거점 대규모 간첩단 사건은 조작되었다고 불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최종길의 간첩혐의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최종길이 투신자살할 동기가 없고, 화장실에서의 투신은 정황상 설득력이 없으며, 사체사건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중앙정보부의 불법적인 고문에 의한 사망의혹이 제기되므로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8호 (신영수 사건)

의문사한 자	◦ 신영수(1961년 4월 9일생, 대학생)
피진정기관	◦ 불특정
사망일시	◦ 1982년 3월 12일
사건개요	◦ 신영수는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2부 2학년에 재학하던 중, 1982년 3월 12일 군에 입대하는 친구 송별회에 참석한 후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22:30경 헤어졌다가, 서울 잠실 근처 삼성교 밑에서 변사체로 발견됨.
수사결과	◦ 타살 혐의 없어 내사종결.
진정취지	◦ 자살할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고, 정○○ 계장(소속 불명)이 사망당시에 신영수를 계획적으로 미행한 사실이 있으며, 수사과정과 수사결과를 납득할 수 없고,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의 부검도 조작되었기에 진상규명을 요구함.
결 정	◦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진정을 기각함.

□ 진정 제9호 (김창수 사건)

의문사한 자	◦ 김창수(1918년 2월 5일생, 국회의원 목포시 동선거관리부위원장)
피진정기관	◦ 불특정
사망일시	◦ 1971년 6월 25일
사건개요	◦ 김창수는 1971년 5월 25일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일 당시 전남 목포시 대성동1구투표소에서 동선거관리부 위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하다가 투표용지가 1백장이 부족한 사실을 발견하고, 시선거관리 위원회에 보고한 후 "단순한 사무착오이니 그대로 투표를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무사히 투표사무가 완료하였는데, 개표결과 당시 집권당인 공화당이 야당인 신민당에게 패하게 되자 야당이 이 투표지 1백매를 절취하여 부정 투표를 했다고 소송을 제기하고, 문제의 투표용지 부족 사실을 처음 목격한 김창수를 서울에 있는 참고인과 대질신문하기 위하여 경찰간부 2명, 공화당 간부 2명과 함께 야간열차로 상경하던 중 전북 김제역 부근에서 변사체로 발견됨.
수사결과	◦ 1차 수사발표 - 자살 ◦ 2차 수사발표 - 실족사 ◦ 3차 수사발표 - 취중 추락사 ◦ 4차 수사발표 - 탈출 추락사
진정취지	◦ 사체의 상처부위가 열차에서 떨어졌다고 보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과 사고 시간에 비추어 추락장소가 불일치하는 점, 또한 1971년 6월 27일 실시한 사체부검의 결과에 대하여 유가족의 공개적 발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당시 수사에 의도적인 은폐의혹과 함께 타살 의혹이 제기되기에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10호 (이창돈 사건)

의문사한 자	◦ 이창돈(1962년 4월 3일생, 군인)
피진정기관	◦ 육군 제6815부대
사망일시	◦ 1984년 5월 14일
사건개요	◦ 이창돈은 1982년 인천 인하대학교 기계학과에 입학하여 YMCA 내의 자생 씨클 <자운영>에 가입, 총무로서 활동하다가, 1983년 8월 1일 군에 입대하여 같은해 12월 8일 육군 제17사단 포병연대 306대대로 전입, 수송부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 1984년 5월 14일 소속대 내무반에서 총기에 의하여 사망함.
수사결과	◦ 가정불화, 신상비관을 이유로 자살한 것으로 수사종결
진정취지	◦ 자살 동기가 불분명하며, 이창돈이 군복무중 집으로 보낸 편지 내용 중 '서클' 등의 표현이 문제가 되어 운동권으로 몰려 살해당한 의혹이 있고, 사망 전까지의 정황으로 미루어 정신이상자의 자살로 결론지으려는 계획된 범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기에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11호 (우수열 사건)

의문사한 자	◦ 우수열(1962년 2월 1일생, 대학생)
피진정기관	◦ 불특정
사망일시	◦ 1985년 6월 30일
사건개요	◦ 우수열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4학년에 재학하던 중, 1985년 6월 28일 20:00경 방학인데도 학교에 간다고 집을 나갔다가, 같은달 30일 08:30경 서울 용산1가 17번지 소재 남영역과 용산역 사이의 철로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됨.
수사결과	◦ 철로에 누워있다가 전동차에 머리가 치어 자살한 것으로 수사종결.
진정취지	◦ 우수열은 사건당일 한 달 전부터 타인으로부터 감시 또는 쫓기는 듯한 인상을 받아 가족들이 불안하게 생각해 왔었고, 사건 발생 전날인 6월 29일 10:00경까지 학교에 있었는데, 같은날 5:00와 11:00에 서울대 시위 학생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가 2회에 걸쳐 진행된 바, 검거 과정에서 연행되어 수사받는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기에 진상규명을 요구함.
결 정	◦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진정을 기각함.

□ 진정 제12호 (이진래 사건)

의문사한 자	◦ 이진래(1959년 2월 17일생, 군인)
피진정기관	◦ 캠프 헨리(대구광역시 소재 카츄사 부대)
사망일시	◦ 1982년 1월 2일
사건개요	◦ 이진래(서울대학교 제약학과 79학번)는 1981년 11월 7일 군 입대 후, 카츄사 부대에 배속된 지 이틀만에 목맨 변사체로 발견됨.
수사결과	◦ 자살로 수사종결.
진정취지	◦ 자살의 동기가 불분명하고, 이진래가 징병검사 당시 체중이 50킬로그램 이하로 현역입영대상이 아님에도 현역판정을 받았고, 군 입대 전 민주화운동에 적극 가담한 바 있어 타살 후 은폐의 의혹이 있어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13호 (장종훈 사건)

의문사한 자	◦ 장종훈(1963년 4월 5일생, 경희대 법대 행정학과4년)
피진정기관	◦ 태능경찰서(현 중랑경찰서)
사망일시	◦ 1989년 3월 31일 07:40경
사건개요	◦ 장로교 청년회 소속 해뜰야학 총무로 활동하다가 1989년 3월 26일 동료들과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서울 중랑구 면목동 행길에서 의식불명인 채로 발견되어, 같은달 31일 07:40경 병원에서 연수마비 및 뇌좌상으로 사망함.
수사결과	◦ 장종훈이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사고 지점은 편도1차로 도로로, 번호불상의 대형차량이 보행 중이던 장종훈을 충격하고 도주한 교통사고로 처리.
진정취지	◦ 장로교 청년회 동노회 총무와 야학을 주도하던 대상자가 문익환 목사 방북보도가 있던 날, 전신에 증상을 입고 4일 후 사망한 바, 공안당국에 의해 피살되었을 가능성과 신체 각 부위의 상처, 납득할 수 없는 수사과정으로 인해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14호 (장준하 사건)

의문사한 자	◦ 장준하 (1911년 3월 20일생, 독립운동가·언론인·재야 민족지도자)
피진정기관	◦ 국가정보원(구 중앙정보부)
사망일시	◦ 1975년 8월 17일 13:20경
사건개요	◦ 장준하는 등산회원 40여명과 함께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도평3리 약사봉 계곡 옆산을 등산하다가 일행들과 떨어져 하산하던 중, 벼랑 14m 아래에서 변사체로 발견됨.
수사결과	◦ 장준하가 하산하다가 경사가 급하여 소나무를 잡고 발을 딛는 순간 소나무가 휘어지면서 미끄러져 14m 벼랑 아래로 추락하여 우측후두부 골절상으로 사고사한 것으로 수사 종결.
진정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인이 외부 가격에 의한 두부 함몰상(추정)이고 우측 팔과 엉덩이에 의문의 주사자국이 있으며 경사70도 높이 14m의 절벽에서 추락한 시신에 다른 골절이 일체 없고, ◦ 추락지점은 길이 없어 일반인이 등산하기 힘들며, ◦ 당시 유일한 사고 목격자의 증언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고, ◦ 사고 3개월전 청와대 비서실로부터 몸조심 당부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고, ◦ 사고 발생 후 현장 출동한 군 수사관이 추가 현장조사를 중지하였으며, ◦ 사건 취재기자의 연행 및 사건보도와 관련 편집기자 구속 및 취재중지 지시사실이 있고, ◦ 사고 규명을 위해 활동하던 장준하의 장남이 테러를 당한 사실이 있는 등으로 미루어 위법한 공권력 행사의 의혹이 있으므로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15호 (박헌강 사건)

의문사한 자	◦ 박헌강(1956년 5월 20일생, 무직)
피진정기관	◦ 불특정
사망일시	◦ 1982년 5월 20일
사건개요	◦ 박헌강은 1982년 5월 16일 전기시설기사 자격검정고시에 응시하러 간 후 같은달 17일경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대전을지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다가, 같은달 20일 6:00경 사망함.
수사결과	◦ 타살 및 범죄혐의 발견할 수 없어 내사종결.
진정취지	◦ 박헌강은 1981년 8월 31일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공업교육 전기과 졸업하였고, 교원임용자격을 획득하였으나 임용이 미루어져 수차례 항의한 사실이 있었고, 사고당일 있었던 시위과정에서 폭행당해 사망한 것을 은폐한 것으로 보이기에 진상규명을 요구함.
결 정	◦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진정을 기각함.

□ 진정 제16호 (황선철 사건) - 각하

의문사한 자	◦ 황선철(1965년 3월 26일생, 전투경찰)
피진정기관	◦ 대한민국
사망일시	◦ 1987년 1월 24일
사건개요	◦ 부산 산업대 재학 중 전경에 입대하여 제주도 전경 601중대 3소대 1분대에 배치 받아 근무하던 중, 유기인제재 농업용 살충제인 메타시투스 중독으로 사망.
수사결과	◦ 경계호에서 농약을 먹고 신음 중인 것을 동료가 발견, 병원으로 이송도중 사망하였고, 변사체에 살충제 특유의 냄새가 날 뿐, 외상없고 타살 혐의 인정 할 수 없어 수사종결.
진정취지	◦ 어깨 부위에 멍이 들어 있었고, 다른 병원 전문의에게 사망원인을 문의한 결과 대답할 수 없다고 답변한 점에 비추어 자살이라고 납득할 수 없으므로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17호 (송중호 사건)

의문사한 자	◦ 송중호(1968년 9월 8일생, 군인)
피진정기관	◦ 국방부/육군 제11사단
사망일시	◦ 1991년 2월 20일 02:00부터 같은날 03:00까지 사이
사건개요	◦ 육군 제11사단 포병연대 955 포병대대 본부포대에서 군 복무를 하던 중, 부대 동계훈련 간 2½t 차량 내에 설치된 사격지휘도판과 차량 벽면사이에 목 부분이 끼인 상태의 변사체로 발견됨.
수사결과	◦ 송중호가 사격지휘도판을 들어 올리고 지나가다가 미끄러지면서 도판과 차량 벽면사이에 목 부분이 끼어 압박되어 사망한 것으로 부주의에 의한 사고사로 처리.
진정취지	◦ 가족들이 사건 후 '자살'로 연락을 받고 부대에 찾아갔으나 '사고사'이라고 사고원인을 번복하였고, 사체에는 화상흔적이 있었고 목 부위의 압박흔적은 질식흔적이 아닌 가격흔적인 점등 사망원인에 의문이 있어 진상규명을 요구함.
결 정	◦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진정을 기각함.

□ 진정 제18호 (박태순 사건)

의문사한 자	◦ 박태순(1966년 9월 12일생, 노동자)
피진정기관	◦ 기무사령부
사망일시	◦ 1992년 8월 29일
사건개요	◦ 1992년 8월 29일 부천시 소재 골판지 생산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시흥동 소재 친형(박영순) 집으로 귀가하던 중 서울 구로역 인근에서 행방불명되었으나, ◦ 2001년 2월 본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시흥 전철역에서 열차충돌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 됨.
수사결과	◦ 행방불명
진정취지	◦ 박태순은 1985년 한신대학교 철학과에 입학하여 1987년부터 노동운동을 하다 1989. 5. 20. 구속되어 1년 6개월간 복역한 사실이 있고, ◦ 1990년 11월 13일 부산교도소 출소 후 계속 노동운동을 하였으며, ◦ 병무청 영장수취 거부로 주민등록 말소로 기무사령부의 추적을 받았는 바, ◦ 열차충돌 사망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있어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19호 (이철규 사건)

의문사한 자	◦ 이철규 (1965년 5월 6일생, 조선대학교 학생)
피진정기관	◦公安합수부(국가안전기획부·검찰·경찰)
사망일시	◦ 1989년 5월 3일부터 같은달 10일까지 사이
사건개요	◦ 이철규는 조선대학교 재학시 1989년 1월 민주조선 교지 편집위원장을 맡아 1989년 4월 10일 창간호를 발행, 이와 관련하여 같은달 20일경 편집위원 전원에 대한 수배조치가 내려진 후, 1989년 5월 3일 후배 생일축하를 위해 택시를 타고 약속장소로 가던 중,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동 소재 청암교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은 이후 행방 불명되었다가, 같은달 10일 11:30경 청옥동 제4수원지에서 변사체로 발견됨.
수사결과	◦ 경찰의 검문을 당하자 도주하여 경찰의 추적을 피해 철조망을 넘어 수원지 내로 들어갔다가 술기운 때문에 실족, 추락하여 익사한 것으로 수사종결.
진정취지	◦公安합수부의 계획적인 수배자 검거 작전에 의해 연행되었을 것이며 수사도중 사망하여 사체가 유기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 검찰이 발표한 실족 추락 후 익사라는 단정적인 수사결과를 믿을 수 없으므로, ◦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20호 (이내창 사건)

의문사한 자	◦ 이내창(1962년 5월 11일생,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피진정기관	◦ 국가안전기획부인천지부/순천지방검찰청/여수경찰서
사망일시	◦ 1989년 8월 15일
사건개요	◦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으로 활동 중 1989년 8월 14일 중앙대학교와 안성 시내를 세 차례 왕복하면서 바빠 다니다가 행적이 묘연해진 후, ◦ 같은달 15일 신영훼리호를 타고 거문도에 들어가 볍음밥을 먹고, 유림해수욕장에 들어간 후 익사한 변사체로 발견됨.
수사결과	◦ 학생운동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돌연 거문도행을 결행하고 유림해수욕장 근처 바위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미끄러져서 실족, 익사한 것으로 수사종결.
진정취지	◦ 부검 결과 이내창의 머리에 난 상처가 중상에 이르는 상처이고, 이 상처는 물에 빠져서 난 상처로 보기 어려워 물에 빠지기 전에 중상에 이르는 가적이 있었던 것이므로 실족했다는 수사결론은 믿을 수 없고, ◦ 안전기획부 인천분실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 1명과 그의 친구 1명이 이내창의 거문도행에 동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 사망과정에 의문이 있으므로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21호 (박창수 사건)

의문사한 자	◦ 박창수(1960년 7월 28일생,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위원장)
피진정기관	◦ 국가정보원(구 안전기획부)
사망일시	◦ 1991년 5월 6일
사건개요	◦ 1991년 2월 10일 노동관계법령위반(제3자개입금지)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후, 같은해 5월 4일 서울 구치소 내 운동장에서 두개골골절상을 입어 안양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같은달 6일 4:45경 안양병원 뒤편 어린이 놀이터 시멘트 바닥에서 변사체로 발견됨.
수사결과	◦ 노동운동에 회의를 느껴 투신자살한 것으로 수사종결.
진정취지	◦ 한진중공업의 민주노조를 와해 하고자, 안전기획부 직원이 깊숙이 개입해 있었고, ◦ 대기업 연대회의와 관련하여 박창수를 구속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 박창수가 구속된 후에도 안전기획부는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접근하여 전노협, 대기업연대회의 탈퇴를 종용해 왔고, ◦ 병원으로 후송된 박창수에게 전화를 하여 전노협 탈퇴를 종용했는데 박창수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밤늦게 안양병원으로 찾아와 다툼이 생겨 사고가 났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22호 (김준배 사건)

의문사한 자	◦ 김준배(1970년 1월 10일생, 한총련 투쟁국장)
피진정기관	◦ 대한민국
사망일시	◦ 1997년 9월 16일
사건개요	◦ 1997년 한총련 투쟁국장으로 지명수배를 받아 은신 중, 같은해 9월 15일 전남도경 형사기동대의 검거를 위한 추적을 받다가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소재 청암아파트 108호 화단 앞에서 변사체로 발견됨.
수사결과	◦ 김준배가 청암아파트 1308호에서 경찰의 검거를 피하기 위해 베란다를 넘어 케이블선(인입선)을 타고 도주하다가 4층 높이에서 추락하여 간우엽 손상 및 다량실혈로 사고사한 것으로 내사종결.
진정취지	◦ 변사체의 두부와 안면에 큰 상처가 없으며, 치아가 깨끗하였고, 가슴 왼쪽 아랫부분에 갈비뼈 골절상이 있는 등 검거과정에서의 경찰관에 의한 폭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므로 사망원인에 의문이 있어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23호 (이덕인 사건)

의문사한 자	◦ 이덕인(1967년 12월 14일생, 노점상)
피진정기관	◦ 인천 남부경찰서/인천시청
사망일시	◦ 1995년 11월 25일부터 같은달 28일까지 사이
사건개요	◦ 이덕인은 1995년 7월 3일부터 인천 아암도에서 노점 장사를 시작하였다. ◦ 같은 해 11월 24일 인천시 연수구의 강제철거 계획에 의해 철거용역회사 '무창', 경찰 등 1,900명이 동원된 공 권력에 저항하여 30여명과 함께 망루농성을 하다가, 같은 달 25일 21:00 경 망루에서 탈출 시도한 뒤 행방 불명된 후, 같은 달 28일 10:00경 아암도 해변에서 상의 가 벗겨진 채 밧줄이 온몸에 감겨진 상태의 변사체로 발견됨.
수사결과	◦ 이덕인이 망루에서 탈출하여 연안부두 쪽으로 수영을 하다가 수영 미숙으로 탈진, 익사한 것으로 수사종결. (수영을 하다 로프에 감겼는지 방파제에 있는 로프를 잡고 올라가다가 감겼는지는 미확인됨)
진정취지	◦ 이미 경찰이 이덕인의 탈출시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덕인이 연안부두로 헤엄쳐 가려한 것이 아니고 노점 상 하던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어선 통제소 쪽으로 수로개구명(깊이 50~70cm로 해안도로 지하로 관통됨)을 이용하여 탈출을 시도하려 한 것이었으며, 또한 변사체에 멍 자국 등이 있고 로프에 감긴 것으로 보아 타살의 의심이 있으므로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24호 (우종원 사건)

의문사한 자	◦ 우종원(1962년 5월 5일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4년)
피진정기관	◦ 치안본부/국가안전기획부
사망일시	◦ 1985년 10월 11일 추정
사건개요	◦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 관련자로 수배를 받고 은신 중, 1985년 10월 12일 경부선 하행 황간역 부근 철로변에서 변사체로 발견.
수사결과	◦ 운동권으로부터 소외와 가정적 문제로 비판하여 수원발 동대구행 통일호 열차에서 추락, 두개골 파열 등으로 자살한 것으로 수사종결.
진정취지	◦ 자살할 이유가 없으며 자살추정 근거가 된 쪽지에 타인 필적의 주민등록번호가 가필되어 있는 점 및 변사체의 옷차림과 사체 외양 등으로 보아 타살의 의심이 있으므로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25호 (김성수 사건)

의문사한 자	◦ 김성수(1968년 4월 15일생, 서울대 지리학과 1년)
피진정기관	◦ 대한민국/군보안대/안기부/치안본부/관악경찰서
사망일시	◦ 1986년 6월 20일 22:00경 추정
사건개요	◦ 기말고사 교련시험을 앞둔 1986년 6월 18일 아침경 자취집에서 전화를 받고 나간 후 행방불명되었다가, 같은달 21일 부산 송도 앞 바다에서 시멘트 덩이를 매단 변사체로 발견됨.
수사결과	◦ 성적 저하를 비판하여 자살한 것으로 수사종결.
진정취지	◦ 자살에 대한 징후가 없고 변사장소는 민간인 통제구역이며, 사체 정황에 대한 의문점, 기말고사를 보지 않아 성적을 비판할 여지가 없는 점 등 사망원인에 의문이 있으므로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26호 (문용섭 사건)

의문사한 자	◦ 문용섭(1941년 10월 28일생, 서울 광무택시 운전사)
피진정기관	◦ 대한민국
사망일시	◦ 1988년 6월 9일 20:15경
사건개요	◦ 광무택시의 친인척 비리에 대해 항의를 하던 중, 회사 관리부장, 과장의 호명을 받고 사측 간부와 같이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며 협박을 받다가, 1988년 6월 6일 회사 측 구사대인 신세일 등의 폭력에 의해 실신하여 동부제일병원에 입원, 치료하던 중 같은 달 9일 20시 15분 경 사망함.
수사결과	◦ 단순폭행, 과실치사로 수사종결.
진정취지	◦ 단순한 개인 폭력이 아니고 회사의 비민주적 족벌경영과 비리폭로를 우려하여 구사대 폭력을 사주하여 발생한 사고로 회사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 왜곡시켜 과실치사로 축소한 의문이 제기되므로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27호 (문승필 사건)

의문사한 자	◦ 문승필(1973년 4월 15일생, 전남대 화학공학과 3년)
피진정기관	◦ 경찰/광주 동부경찰서
사망일시	◦ 1992년 10월 14일
사건개요	◦ 1990년 전남대 입학,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1991년 8월 시위로 구속된 전력이 있으며, 1992년 10월 14일 하교한 후 동료들과 모임을 가진 다음 같은달 15일 00:55경 경전선 광주역 농장다리부근 철길에서 변사체로 발견됨.
수사결과	◦ 달려오는 기차에 뛰어들어 자살한 것으로 수사종결.
진정취지	◦ 열차 사고라 하나 사체가 깨끗했고, 유품 중에 전화번호가 있었음에도 유족에게 19일이 지난 후에 연락을 취하는 등 수사과정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으므로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28호 (정법영 사건)

의문사한 자	◦ 정법영(1960년 6월 20일생, 청주 신학대 2년)
피진정기관	◦ 불특정
사망일시	◦ 1978년 7월 8일
사건개요	◦ 정법영은 1978년 3월경부터 청주 도시산업선교회에서 청주지역 농민, 노동자들과 함께 150여일 동안 농성을 하던 중 같은해 7월 5일 돌연 약물중독으로 입원, 같은달 8일 치료 중 사망.
수사결과	◦ 수사자료 없음
진정취지	◦ 청주지역에서 민중 산업선교활동을 해오던 정법영의 아버지 정진동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시, 협박 등이 있었고, 병원의 음독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처치 등의 의혹이 있으므로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29호 (김상원 사건)

의문사한 자	◦ 김상원(1953년 5월 17일생, 도장공)
피진정기관	◦ 영등포경찰서 및 직할 중앙파출소 이병호외 10명의 경찰관
사망일시	◦ 1986년 5월 26일 23:30경
사건개요	◦ 1986년 3월 10일 영등포에서 불심검문에 항의하다 중앙파출소로 연행된 후, 영등포 시립병원에 행려병자로 입원,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의 식물인간으로 치료를 받다 같은해 5월 26일 사망.
수사결과	◦ 김상원 상해치사로 피의자를 성명 일체불상자로 기소 중지함. ◦ 고소, 고발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됨. ◦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하였고, 피의자 이병호(중앙파출소 경찰관)에 대하여 법원의 부심판 결정. ◦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를 비롯한 경찰관들의 배상판결 선고됨. ◦ 두 개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신청, 기각. ◦ 피고인 이병호,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됨.
진정취지	◦ 경찰관들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 공문서위조 등 당시 경찰들의 전형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유족 측이 민사소송 등에서 승소하고 미국의 뉴욕타임즈에 기사가 게재되고, UN 인권위원회에 사례보고가 되었으며, 법원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등 부분적으로나마 사건이 해결되었으나, ◦ 가해자가 축소되는 등 경찰들의 조직적인 사건 축소, 은폐 등이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아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30호 (이재호 사건)

의문사한 자	◦ 이재호(1964년 5월 6일생, 협신사 근무 노동자)
피진정기관	◦ 경찰청/인천 동부경찰서
사망일시	◦ 1989년 10월 29일 00:40경
사건개요	◦ 1989년 협신사 내에서 민주노조 재건을 위해 10여명의 노동자들과 함께 노조재건축추진위원회 활동을 하던중, 같은해 10월 28일 주안역 인근에서 술을 마시다 회사 생산부장과 전화통화 후 말없이 술집을 나간 뒤, 같은달 29일 00:40경 주안4동 소재 집 근처 주차장 앞에서 둔기에 턱을 맞은 상태의 변사체로 발견됨.
수사결과	◦ 미제 사건으로 수사중임.
진정취지	◦ 경찰은 이재호의 피살이후 다른 가능성은 배제한 채 동료들만 불러 요식적인 수사를 진행하였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인근불량배와 시비 끝에 피살되었다고 단정하였으며, 유족들에게 사체를 화장토록 유도하였고, 유력한 증거물인 망인의 피묻은 잠바를 세탁해 버리는 등 수사과정에 의혹이 많기에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31호 (고정희 사건)

의문사한 자	◦ 고정희(1960년 12월 14일생, 대학생 연세대 정외과)
피진정기관	◦ 대한민국
사망일시	◦ 1988년 5월 13일
사건개요	◦ 1988년 3월경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부정선거 항의투서건으로 서초경찰서에 연행되었다가 경찰에 의해 강남성모병원 정신병동에 강제 입원 조치되어 가료 중, 같은해 5월 13일 병원 건물 앞에서 변사체로 발견됨.
수사결과	◦ 투신자살로 수사종결(수사자료 없음)
진정취지	◦ 자살 징후, 유서 없고, 현장목격자가 없으며, 추락현장에 혈흔이 거의 없고, 사고 경위에 대한 병원관계자의 엇갈린 진술 등 여러 가지 의문이 많으므로 진상규명을 요구함.
결 정	◦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진정을 기각함.

□ 진정 제32호 (허원근 사건)

의문사한 자	◦ 허원근(1962년 5월 15일생, 군인)
피진정기관	◦ 국방부/육군 제7사단
사망일시	◦ 1984년 4월 2일 10:50경
사건개요	◦ 1984년 4월 2일 13:00경 소속대인 육군 제7사단 3연대 3중대 내무반에서 남방 약 50m 떨어진 폐 유류고 뒤에서 가슴에 2발, 머리에 1발의 총상으로 두개골 파열상을 입은 변사체로 발견됨.
수사결과	◦ 소속대 중대장 김석홍의 이상성격에 의한 흑사로 인해 비관하여, 중대장 김석홍이 보급계 상병 이진영을 대동하여 철책 근무 순찰 나가는 시간을 기회로 내무반 상황실 탄통 위에 얹혀 있는 15발들이 탄창 2개를 절취하여 자신의 지급총기 M16을 휴대하고 내무반에서 남방 약 50m 떨어진 폐 유류고 뒤에 도착, 휴대한 소총에 15발들이 탄창을 삽탄, 가슴에 2발, 머리에 1발을 발사하여 자살한 것으로 수사종결.
진정취지	◦ 중대원들에 비해 중대장에게 구타를 더 당하지도 않았고, 자살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고, 유서도 없으며, ◦ 자살을 하기 위해 총을 가슴에 두발, 머리에 한발 모두 3발을 쏘 자살했다는 것은 상식상 납득하기 어렵고, ◦ 사건 발생 후 부대 관계자들이 사건 현장과 시간을 조작한 사실이 있는 등 사망원인에 의문이 있으므로 진상 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33호 (문영수 사건)

의문사한 자	◦ 문영수(1953년 11월 10일생, 진아교통 버스운전기사제직중 실직)
피진정기관	◦ 경찰청/광주 서부경찰서 관할 역전파출소
사망일시	◦ 1982년 8월 22일 18:05경
사건개요	◦ 1982년 8월 19일경 행방불명되었다가, 유족은 1987년경 전남도경의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하여 문영수가 1982년 8월 22일경 행려환자로 적십자병원에 입원 치료중 사망하여 전남대 의과대학에 해부학 실습용으로 사체 처리된 사실을 알게됨.
수사결과	◦ 1982년 8월 20일 09:00경 순찰중 쓰러져 있는 문영수를 발견하여 광주시 유동 소재 조세현 외과에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적십자병원에 입원시켰으나 같은달 22일에 지병인 뇌혈관 장애로 사망하자, 무연고자임을 이유로 전남대 의과대학에 해부학 실습용으로 사체처리. ◦ 유족이 문영수의 사망 및 해부학 실습용으로 사체처리된 사실을 알고 진정하자, 담당경찰관을 자체징계 조치함.
진정취지	◦ 수사결과와는 달리, 문영수는 1982년 8월 19일 21:00경 광주 중흥동에서 김광호와 음주중 싸움을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역전파출소로 연행되어 서부경찰서 형사계로 인계되었다가 적십자병원에서 사망하자 전남대 의과대학에 해부학 실습용으로 사체 처리된 것이고, ◦ 사망자의 인적사항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경찰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고자 없음으로 처리, 행려환자로 광주 적십자병원에 입원시킨 경위가 불분명하고, 사망 후 유족에게 연락도 아니하고 해부학 실습용으로 사체처리 한 것은 국가기관의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34호 (오범근 사건)

의문사한 자	◦ 오범근(1951년 11월 15일생, 후지카 대원전기 경비실 직원)
피진정기관	◦ 경찰청/구로경찰서
사망일시	◦ 1988년 3월 10일 10:20경
사건개요	◦ 1988년 3월 9일 21:40경 노동자의 파업농성이 해산된 후, 같은달 10일 아침경 동료 수위들과 해산의 부당함을 토로 하던 중 전무이사실에서 호출을 받고 올라간 뒤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에 후송 치료 중 같은날 10:20경 사망.
수사결과	◦ 음독 자살한 것으로 수사종결.
진정취지	◦ 사망당일도 구사대의 파업농성 파괴에 분노하면서 노조 재건에 대한 열의를 보이는 등 자살동기가 없고, 유서 한 장도 없이 자살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으며, "오범근이 술에 취한 채 쓰러진 것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곧 사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이 허위보고하는 등 사망원인에 의문이 있기에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35호 (배중손 사건)

의문사한 자	◦ 배중손(1955년 8월 30일생, 구미 금성사 생산직 근로자)
피진정기관	◦ 경찰청
사망일시	◦ 1988년 11월 14일 14:3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
사건개요	◦ 1988년 11월 14일 회사에 출근하여 자재창고에서 일을 하였으나, 같은 날 오후 경 사내에서 목을 맨 변사체로 발견 됨.
수사결과	◦ 목을 메어 자살한 것으로 수사종결(수사자료 없음).
진정취지	◦ 1987년 8월 12일 부터 같은달 16일 까지 사이의 회사의 휴업조치 이후 어용노조의 민주화와 임금인상 파업농성 과정에서 앞장서 싸운 사실과 관련하여, ◦ 같은해 9월 5일 부터 같은달 15일 사측에서 부산에 있는 관리자와 함께 강제출장을 다녀온 후 이상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10일간 신경정신병원에 입원하였고, ◦ 입원치료기간동안 휴직계를 사측에서 처리하지 않아 해고되었다, 7개월 후인 1988년 5월 5일 에서야 복직된 사실이 있는 등 ◦ 배중손의 사망당시 행적에 관하여 회사와 동료의 증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를 명확히 조사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자살로 종결처리 한 것으로 ◦ 사망원인에 의문이 있으므로 진상규명을 요구함.
결 정	◦ 진정인이 2001. 4. 16. 이 사건 진정을 취하하였으므로 조사를 종결함.